

##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

###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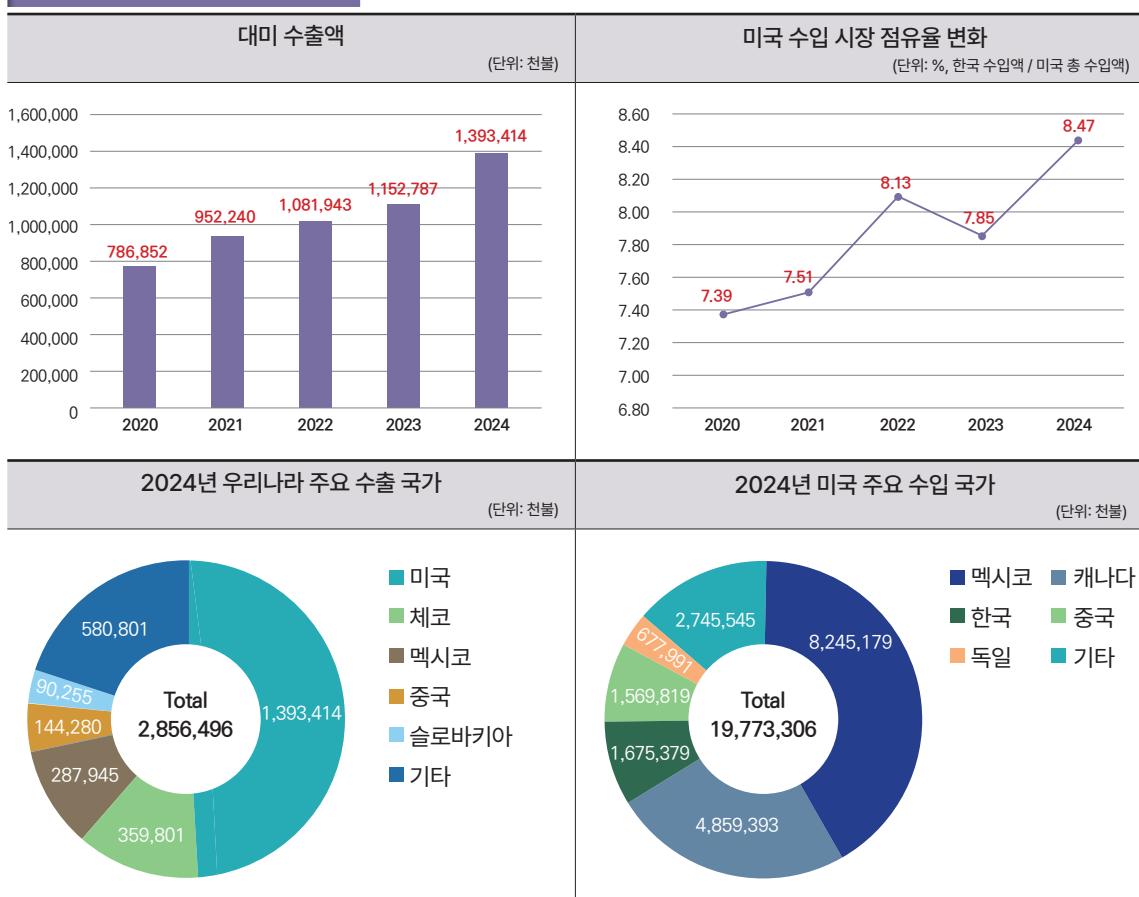
사례명	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사례번호	NY N336183 (2023.11.22.)
사실관계	중국산 기판, 네덜란드산 직물, 미국산 접착제·나사·브래킷·라벨, 캐나다산 클립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을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본 사안의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었으므로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따라 제8708.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나, 원재료 중 하나인 기판의 HS Code가 제8708.29호에 해당하여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『19 C.F.R. § 102.11(b)』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</li><li>『19 C.F.R. § 102.11(b)』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데, 본 사안의 경우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는 중국산 기판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</li></ul> <p>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기판에 의해 결정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판의 명칭, 성질,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,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</li></ul>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(19 C.F.R. § 102) 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

## I 품목개요

### 품목정보

HS Code	제8708.29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0~2.5%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. 1.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.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%, 공제법의 경우 55%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	

### 제8708.29호 시장 정보



❖ 자료: K-stat

## II 판정사례

### 사례명 [자동차용 트렁크 하판]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사례번호 NY N336183 (2023.11.22.)

#### 사실관계

요청자 Grupo Antolin Silao, S.A. de C.V.(대리인: Victor Gonzalez LLC)

제품명	•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판 (중국산)</li> <li>• 직물 (네덜란드산)</li> <li>• 접착제, 나사, 브래킷, 라벨 (미국산)</li> <li>• 클립 (캐나다산) 등</li> </ul>
제품	
용도	• 자동차의 트렁크 하단에 위치하는 적재면 보강 패널
원재료 HTSUS	• 중국산 기판: 8708.29
완제품 HTSUS	• 8708.29.5160

#### 제조공정



#### 상세공정

1. 중국, 네덜란드, 미국, 캐나다산 재료를 멕시코로 수입
2. 중국산 기판에 직물을 결합
3. 나사, 클립 브래킷, 라벨 등을 부착하여 완제품 제조
4. 미국으로 수출

## 쟁점사항

- ✓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
- ✓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1

##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

## 관련 법령 검토

- ▣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 - 단,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『19 C.F.R. § 102』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
  - 『19 C.F.R. § 102.11(a)』에 따르면,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른
    -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
    -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
    -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,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- ▣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,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, 이에 따라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명시된 제8708.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
  -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(제8708.95호는 제외한다)
- ▣ 다만, 『19 C.F.R. § 102.11(a)』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, 『19 C.F.R. § 102.11(b)』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이는 다음과 같음
  -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(essential character)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(single material)의 원산지로 간주된다.

## 판정 결과

- ▣ 본 사안의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었으므로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따라 제8708.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나, 원재료 중 하나인 기판의 HS Code가 제8708.29호에 해당하여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『19 C.F.R. § 102.11(b)』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
- ▣ 『19 C.F.R. § 102.11(b)』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데, 본 사안의 경우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는 중국산 기판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

2

##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## 관련 법령 검토

- ▣ 『Section 301(b) of the Trade Act of 1974』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, 이는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- 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CPA 267, C.A.D. 98 (1940)
- 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*, 16 CIT 308 (1992), aff'd, 989 F. 2d 1201 (Fed. Cir. 1993)
- ❖ 참고 판례: *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. The United States*, 207 U.S. 556 (1908)
- ❖ 참고 판례: *Uniroyal Inc. v. United States*, 542 F. Supp. 1026 (1982)

- 그러나,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- 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, 1029 (1982), aff'd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 (*Uniroyal*)

-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- 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W968434* (2007.01.17.)
- 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*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

## 판정 결과

▣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기판에 의해 결정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판의 명칭, 성질,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,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

## 결론

- ✓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중국임
- ✓ 제301조 적용을 위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이므로 해당 조치 대상에 해당함

## III 시사점

-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시 우선적으로 『19 C.F.R. § 102.11(a)』 규정이 적용되나,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『19 C.F.R. § 102.11(b)』에 따라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음



##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36183 (2023.11.22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36183>
- CBP Ruling HQ W968434 (2007.01.17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W968434>
- CBP 19 C.F.R. § 134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34>
- CBP 19 C.F.R. § 102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02>
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2411&num=0&edition=prelim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[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\\_by=score+desc&stat\\_Published=on](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)
-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. The United States (1908), [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96747/anheuser-busch-brewing-assn-v-united-states/?q=Anheuser+Busch+Brewing+Association+v.+The+United+States+1908&type=o&order\\_by=score+desc&stat\\_Published=on](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96747/anheuser-busch-brewing-assn-v-united-states/?q=Anheuser+Busch+Brewing+Association+v.+The+United+States+1908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)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
- 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 (1987), [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\\_by=score+desc&stat\\_Published=on](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1504219/ferrostaal-metals-corp-v-united-states/?q=Ferrostaal+Metals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)